

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한 「각종 행사운영 가이드라인」(4차)

- ◆ 코로나19 국내 및 도내 상황 등 종합적으로 고려 **현 가이드라인(3차) 현행유지 원칙**, 불가피한 경우 방역지침 준수 전제로 제한적 허용
 - * 수도권 집단감염 지속, 중부권지역 집단 감염 발생 등 비수도권 확산 우려,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비율 10%초과(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지표는 5%)
 - 중대본(20.6.18.) '전국적으로 코로나19 유행 주의하고 대비해야하는 상황'

1 행정기관 주관 각종 행사·회의 : 원칙적으로 연기 또는 취소

- 가급적 화상(서면)회의로 개최하되, 법률규정상 의무적 사항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「방역지침」을 준수하여 30명 이내 허용
 - * 일상적이고 정례적인 회의 등은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.
- 법정기념일·도정현안 관련하여 중앙부처, 도의회등과 협의된 행사(공청회, 설명회 등)는 「방역지침」 준수를 전제로 허용.(30명 초과시 공공청사 사용 금지)

2 민간단체 주관 행사 : 원칙적으로 연기 또는 취소

- 불가피한 경우 도민대상 행사에 한하여 반드시 「방역지침」을 준수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개최하되, 행사기간·방법·규모, 방역계획 등 세부사항은 행사주관 단체와 관련부서간 반드시 사전협의하여 운영
 - ※ 불가피한 경우에도 다음의 사항에 대해서는 연기 또는 취소
 - ① 행사 주최기관이 준비 기간 및 행사 과정 중 방역 조치 시행 곤란 한 경우
 - ② 다수의 취약계층(65세 이상 노인, 5세 미만 영유아, 임산부 등) 참여 행사
 - ③ 밀폐되고 협소한 공간에 집결하는 행사
 - ※ 위 지침 위반 시 집합금지(제한) 명령 시행(관련부서 → 보건위생과)
- 도·행정시·읍면동 청사, 마을복지회관 : 사용금지
 - * 마을복지회관 개방은 경로당 개방시기와 연계추진

3 행정사항

- 전부서(행정시, 읍면동 포함)에서는 본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행사운영 및 소관 기관·단체 안내
- 본가이드라인은 2020.6.18.(목)부터 적용하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'제주형생활방역위원회'에서 추가지침 마련시까지 유효